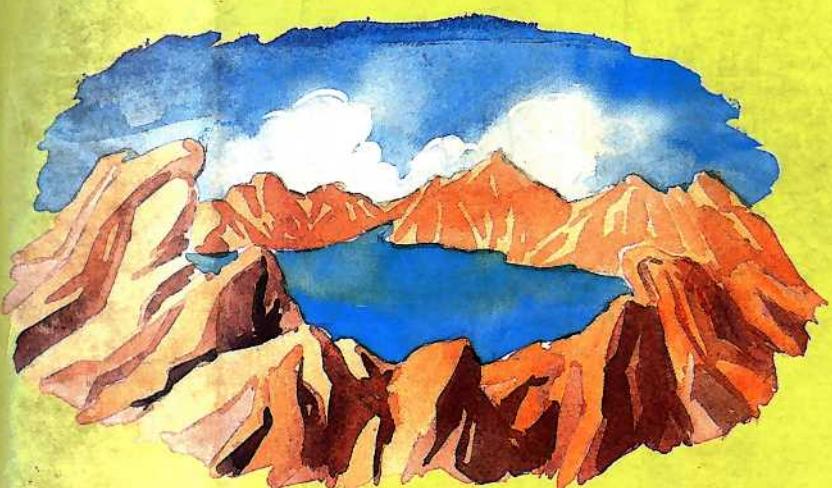


민족의 기슴을 동여맨 빗줄을 풀자!

국가보안법 이야기

NSL1.16



8. 15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산하 국가보안법 철폐 대책위원회



값 3,500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NSL1.16

8. 15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산하 국가보안법 철폐 대책위원회

7-1-

민족의 가슴을 동여맨 뱃줄을 풀자!

국가보안법 이야기

8.15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산하 국가보안법 철폐 대책위원회

■ 권두언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전두환정권 때 국가보안법으로 두 번 구속된 적이 있었다. 한 번은 81년이었는데 서울 성수동에 있는 잉꼬법랑이라는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밖에 없었는데 당시 전두환정권은 나를 남영동에 연행해서 온갖 고문을 동원해서 국가보안법에 꿰맞췄다. 결국 집에 가지고 있었던 책한권을 소지반포탐독했다 해서 2년을 꼬박 살고 나와야 했다.

그후 1987년도 마찬가지였다.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책을 보고 노조를 결성하고 임투를 지원했고 미국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다해서 보안사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 수사를 받고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수괴죄로 징역을 살아야 했다. 아마 이런 사례는 80년대 조국과 민중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비일비재한 사건들이었다.

그런데 우리 처 외삼촌의 경우는 좀 별다른 경우이다. 북한에는 ‘제금이 없고 휴전선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을 술자리에서 했다해서 국가보안법 7조상의 고무찬양죄로 구속되어서 2년을 끔직한 고통속에서 살아야 했다.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신념을 갖고 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더욱더 크셨을 것이다.

결국 우리 처외삼촌은 혹독한 2년여의 감옥살이로 세상과 지독히 담을 쌓고 살아야 하는 자폐증을 얻게 되었다. 반백의 나이임에도 우리 처외삼촌은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채 사회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그래도 휴전선은 없어져야 한다고 날마다 중얼거리면서 보는 이를 안타깝게 하고 계신다.

국가보안법은 이 땅의 수많은 죄없는 순박한 백성들을 사실 폐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소위 막걸리국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다. 그리고 1948년 제정이후 역대독재정권들은 이 국가보안법으로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 미국을 지켰다. 60년대 조봉암선생은 평화통일을 주장했다해서 간첩죄로 조작되어서 이승만정권에게 사형을 당해야 했으며 80년대 유성환의원 같은 경우는 '반공이 국시가 아니라 통일이 국시'라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을 살아야 했다.

'남과 북은 통일되기 전까지 특수한 관계이다.'

이 말은 1991년 12월 13일 남과북 사이에 합의한 '남과북 사이의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전문에 나오는 말이다. 사실 이 기본합의서 그대로 남과 북이 실천한다면 실제 통일은 다된 것이다. 남과북 사이에 군비가 축소되어 국방비로 가는 세금이 국민들의 복지비로 지출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한결 높아질 수 있으며, 남과북 사이에 완전 평화가 보장되고, 정치경제군사문화 모든 부분에서 남과북사이는 적대관계에서 협력하는 특수한 관계로 된다.

쉽게 말해서 남쪽의 총각과 북쪽의 처녀들이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감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남북기본합의

서가 그 동안 남북사이에 전혀 지켜지질 않았고 오히려 핵문제를 빌미로 극단적인 대립만 해왔다. 이제 핵문제도 풀렸다. 이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방해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남과북 사이는 통일되기 전까지 특수한 관계(약혼관계)라고 했던 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되고 대립되는 '북은 대한민국의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언론의 왜곡으로 북쪽도 남을 적으로 한 법이 있는데 우리만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없앨 경우 남쪽이 적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들을 하신다. 그러나 사실은 북쪽은 이러한 법을 이미 폐기했고 이러한 의도를 포기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책의 제2장에서 나와있으므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통일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북미핵협상타결, 북미 북일 수교 가시화로, 우리의 쌀지원 성사로 우리 눈앞에 와있다. 남북기본합의서라는 새 부대에 평화와 통일의 새 술을 담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형법으로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으로 해소되어야 하고 제7조는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

제비가 날기 시작하면 봄은 이미 와있다. 평화와 통일은 이미 우리 한반도에 와있다. 국가보안법은 이 땅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벌써 정리되었어야 했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들이 진즉 발간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이론서만 출간되었을 뿐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이해하게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이철상, 김남곤, 고상만 동지들에게도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린다.

95년 7월 4일
8·15민족공동행사 준비위 국가보안법철폐대책위원장
최규엽

차례

1. 국가보안법 투쟁을 다시 시작하며

프로메테우스의 불인가 시지프스의 신화인가?

X세대가 부정해야 할 첫번째 대상

박홍 해프닝

결자해지해서 세계로 미래로

2. 북한이야기

지겨운 보릿고개 이야기

여전히 북한은 남한 적화야욕을 가지고 있는가?

북한에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있다는데!

3. 남북합의서 이행은 죽은자식 불알 만지기인가?

7·4남북공동성명에 이은 소중한 약속

동상이몽

남북합의서를 살리자!

4. 철조망보다 더 강한 분단의 장벽

5. 대통령 제조기

모래시계의 한계

선거와 간첩단의 함수관계

6. 인권의 사각지대

막걸리 보안법(범죄의 성립)

고문전문가 이근안(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수사과정)

구속기간의 연장

만델라가 오래 살았다고요?(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수형생활)

쇼생크 탈출(출소후에도 이어지는 인권유린)

7. 엿장수 마음대로 법은 만인앞에 불평등하다

8. 국가보안법 길들이기

카멜레온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속알읽기

9. 문민시대의 국가보안법

당신도 과거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론자였다.

군인보다 민간인이 낫다?

10. 미국은 입장을 분명히 하라

11. 한국정부가 갑자기 자주적으로 변했다

12. 세계의 지원사격

13. 무엇을 할 것인가

대체입법은 대안인가?

그린피스에서 배운다 행동전이 필요하다

14. 국가보안법 폐지의 날이 다가온다

반란의 시작

무죄석방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녹이는 통일편지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마지막 노력은 기울이자!

부록

1. 국가보안법
2. 보안관찰법
3. 보안관찰법시행령
4. 국가보안법대처요령
5.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 1994년 미국무부 남한 인권보고서
8. 인권단체 주소록

1. 국가보안법 투쟁을 다시 시작하며
2. 북한이야기
3. 남북합의서 이행은 죽은자식 불알 만지기인가?
4. 철조망보다 더 강한 분단의 장벽
5. 대통령 제조기
6. 인권의 사각지대
7. 엿장수 마음대로—법은 만인앞에 불평등하다
8. 국가보안법 길들이기
9. 문민시대의 국가보안법
10. 미국은 입장을 분명히 하라
11. 한국정부가 갑자기 자주적으로 변했다
12. 세계의 지원사격
13. 무엇을 할 것인가
14. 국가보안법 폐지의 날이 다가온다

1. 국가보안법 투쟁을 시작하며

프로메테우스의 불인가, 시지프스의 신화인가?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살아온 지 벌써 한 세대가 훌쩍 넘어 두번 째 세대를 지나 조금 있으면 세번째 세대에 접어든다.

국가보안법이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되기 시작했으니까 46세 이하의 사람들은 첫울음과 함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법과 동고동락해온 셈이다.

물론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하여 왔듯이 국가보안법도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고 우리주변을 맴돌았다. 이, 박, 전, 노, 김에 이르기까지 그 본연의 빛을 잃지 않은 채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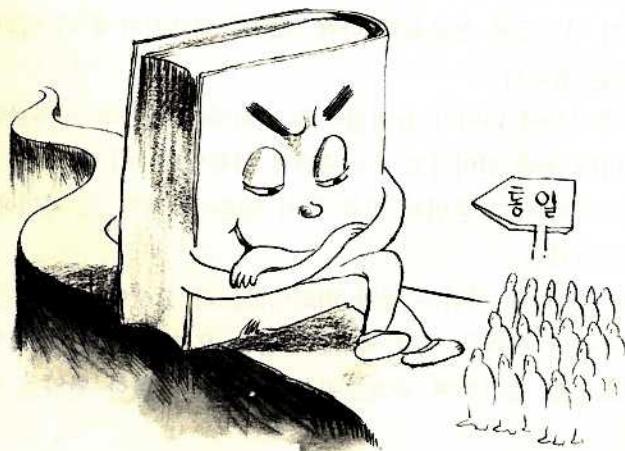
강산이 4번반쯤 바뀌는 동안 버티어오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우리의 지겨운 악당 국가보안법은 오늘 이 순간에도 일간지의 사회면을 장식하며 국가보위를 위해(?) 맹렬한 활약을 벌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활동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 법률이 여순사건 이후 급조(아직 형법이 제정되기도 전이었음)될 당시부터 제헌의회 의원들은 통일에 장애가 되며 민주주의에 위해하고 적용이 자의적일 수 있다하여 반대하였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골격을 유지해온 것처럼 이러한 주장또한 세대를 이어 오늘날까지 비슷하게 주장되고 있다. 마치 열차의 궤도를 연상케하는 오랫동안의 줄다리기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운동하며 변화한다던데 그렇다면 국가보안법도 머지않은 장래에 수명을 다할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쉽게 내릴 수 없다. 물론 이 글을 읽어나가면서 결국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할 운명을 안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지만 당장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바쳐온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얼마나 줄을 알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을 해온 분들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대



하여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척 많은 끈기와 인내를 요구하는 투쟁이라고 이야기한다.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말입니다.

공을 산위로 굴려도 굴려도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수십년동안의 민족민주운동의 고된 과제였던 것이다.

한편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수십년을 일관되게 집착해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해 우리민족과 국민에게 돌아올 긍정적 변화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어처구니없는 국가보안법상의 죄목에 의하여 좌절되어온 것도 그리고 선거시기마다 엉뚱한 간첩단사건으로 소중한 민주정부 수립의 기회를 박탈되어온 것도 이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과 사회의 민주화, 조국의 통일을 염원해온 사람에게 있어서 이 법의 폐지는 그야말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주어준 불처럼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1세기 민족의 미래를 통일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전망한다면 통일이라는 우리들의 절대절명의 과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산을 넘어 야 한다.

X세대가 부정해야 할 첫번째 대상

이처럼 우리 민족 구성원 전체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국가보안법 폐지는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그 중요성이 커진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많은 세

대이고 조국이 통일되고 진보적 당이 건설되어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조국의 역사속에 그들은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 틀림없다.

옛날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이후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여기저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많이 하셨다. 나는 서강대학교 언덕에서 있었던 강연을 한번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문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두가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첫번째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왜 둘을 갈라서 인식하고 노선대결을 벌이느냐는 것이었는데 상당히 투박하고 직설적인 특유의 화법으로 감동을 주었다. 통일이 되면 가장 좋은 사람은 노동자이고, 또 노동자의 힘이 커져야 통일이 빨리 그리고 올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두번째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X세대의 인생계획과 관련한 것이었다.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보다도 통일조국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인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통일은 벼락처럼 여러분의 인생앞에 어느날 갑자기 닥쳐올 것이라고 하셨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분은 죽는 날까지 이러한 통일맞이를 위한 사업을 벌이셨다.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이러한 문익환 목사님의 이야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늘 생생한 감동으로 남아있다. 허허백발의 청년 문익환이라는 이름과 함께 말이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이 나이든 청년이 살아생전 이야기하시던 것을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현실

에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고 새로운 이상을 꿈꾸는 세대라면 말이다.

흔히 요즘의 젊은이들을 통칭하여 신세대 혹은 새세대, X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대개 60~70년대 한국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로 이룬 경제적 성장과 그 물질적 혜택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생존자체가 삶의 고민이 되기 보다는 윤택한 문화생활과 정신생활의 변화가 주요한 관심거리이다. 기존에 주어지는 삶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여러가지로 개척하는 것이 이들 세대가 가진 특유의 모습이라 해서 이들을 X세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저항과 반항 새로운 실험의 대상은 인간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웃차림에서부터 음주문화 그리고 정치적 행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실현과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결실맺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막연하고 산발적인 감각적 변화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남자아이가 귀걸이를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배꼽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그 놈이 그 놈인 정치판에서 투표를 안하면 또 어떤가. 이런 식이어서는 결국 거대한 우리사회의 텁니바퀴속에서 진정한 부정자,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텁니바퀴사이에 짓눌려 편입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유행따라 기업의 이윤획득을 위해 내놓는 수많은 신상품의 소비자로 전락하고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부정이 자칫 무관심으로 흘러 우리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위한 결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X세대의 현실부정은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넘어서서(그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항로를 바꾸어 버릴 조국과 민족과 역사에 관한 문제로 확장될 때

완성된다. 우리가 부정하고 바꾸어갈 20세기말의 현실을 커다란 집에 비유한다면 옷차림의 변화는 거실의 탁자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통일과 민주정권의 수립등의 문제는 바로 이 집의 규모와 기본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크고 좋은 탁자를 들여놓으려고 해도 집이 10평인 경우와 50평인 경우는 근본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21세기의 현실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은 뭐니뭐니해도 바로 통일이다. 군대에 갈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나아가서 우리의 배우자가 북한에 살고 있는 순박한 청년일 수도 있다. 또 우리의 직장이 원산이나 나진이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아침에는 북한에서 배달된 생수로 밥을 해먹고 점심에는 전철을 타고 평양극장에서 열리는 가극을 구경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통일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온통 바꾸어버릴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이미 독일에서 그 엄청난 변화와 후유증이 드러난 바가 있다. 독일에서의 변화보다는 한반도 통일이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가정할 때 조금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느낌이 구체화될 수 있다. 요즘 관심이 높아지는 환경문제 주택문제도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휴전선 이북의 땅들에 집을 짓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면 지금처럼 까마득하게 높은 집값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X세대의 부정대상 1호는 바로 이러한 분단질서의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스스로를 통일 1세대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새세대라면 가장 먼저 부정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조국을 수십년동안 억눌러온 그리고 바로 그들 주변에 아직도 서성거리고 있는 분단과 독재의 찌꺼기이며 꿈꾸어야 할 미래는 통일조국하에

서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찌꺼기의 대표주자가 바로 국가보안법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뒤에 가서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이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우리의 통일로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북한주민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부패와 부정이 자라나는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것임을 명심하자!

박홍 애프닝

국가보안법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건이 얼마전에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이 계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역사속에 전면적으로 드러내었다.

사로청이 사노맹을, 사노맹이 한총련을 배후 조종하고 있다!

북의 공작금을 받고 있는 교수가 여럿 있다.

내가 직접 북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

작년 우리사회에 일파만파를 던지며 충격을 안겨주었던 박홍 서강대 총장의 발언을 기억할 것이다. 대학가에서는 그래서 박홍을 빠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모양이다. 아무튼 박홍 총장의 발언은 잠자고 있던 국가보안법을 깨워 일으켰다. 박홍의 한마디면 모두 주사파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되었다. 언론은 이러한 근거없는 박홍의 발언을 부추겼고 정부는 이것을 기화로 하여 새로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댔다. 사멸해가던 국가보안법은 새로이 활력을 얻

고 (얻어터져 힘을 앓던 뾰족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이 채솟듯)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게 되었다. 물론 박홍 발언을 통해 좌경세력 엄단을 지시한 김영삼 대통령은 기대했던 남북정상회담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

결국 박홍의 발언은 우리사회에 급격하게 남북대결의식을 고양시켰으며 메카시선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보수언론이 한몫을 한 것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다.

화두! 주사파!

박홍의 말은 그 내용도 파격적이지만 더욱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은 그의 언행이다. 속어와 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실로 그가 한 대학의 총장인지를 의심케하며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우리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다음의 말들은 박홍이 즐겨 사용하는 말들이다.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가난한 학생들이 방황하다가 사회에 불만을 품고 주체사상을 받아들인다”거나 “모진 년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분신하라면 한다” 공산당은 같은 이불 속에서 살 맞대고 사는 부부끼리도 모른다” “빤쓰 벗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대가리가비어서’ ‘이북놈의 새끼들이’ ‘미국놈 일본놈’ ‘씨X랄’ ‘X 돼버려라’ ‘개X 같은 새끼들이’ 등.

〈자세한 박홍의 발언요지는 자료를 참조〉

애써 조성된 남북 화해무드를 사정없이 짓밟아 놓은 박홍의 근거없는 발언과 이에 기초한 검찰의 강압수사 그리고 보수언론의 장단은 결국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이끌고 갔다. 1995년 3월 들어도 박홍은 여러차례 주사파가 자신을 암살하려한다는 막무가내의 발언을 일삼았다. 그러나 이제는 관심 끝! 박홍의 근거없는 말의 영향력은 없어졌지만 결국 냉각된 남북관계는 녹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다음 글은 박홍의 무분별한 주사파 발언에 대하여 풍자를 해놓은 글이다. 하이텔에 이현중(uyemura)이라는 사람이 실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글이다.

〈주사파 조직원 명단〉

이상하네…… 누가 이걸 지웠네요. 여기 담당자가 그랬을 리는 없고, 내 동생이 실수를 했나?…… 어쨌든, 바콩이 계속 설치면 나도 참지 않겠다는 경고(정말이지 박살을 내줄 거야!)와 함께 다시 올립니다.

예전에 (8월10일 경이었지요, 아마) 보신 분은 그냥 나가세요.

김일성 : 창시자. 교주. 이미 죽었음. 그러나 죽은 제갈공명

이 산 중달을 내팽개쳤다는 점을 주의할 것.

김정일 : 제2대 교주. 앞으로 50년만 살면 아버지의 집권기록을 깨고 거기서 3년을 더 살면 영조대왕의 기록도 깨. (참고사항 - 장래 희망은 영화감독. 또는 마돈나가 주연하는 마릴린 몬로 전기영화에 촌 F케네디로 출연하는 것.)

덩달이 : 세 살 때, 엄마가 뇌염예방 주사를 맞으러 가자고 하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음.
“난... 주사... 아파!”

〈정계〉

전두환 : 덩달이와 비슷하게 주사파에 포섭. 즉, 백담사에 살 때 세차례 방주사를 맞은 적이 있음.

이순자 : 이심전심. 따라서 그녀도 주사파.

노태우 : 대통령이 얼마나 명청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어 자본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서 그런 대통령은 없는 게 나았다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음.

최규하 : 위와 같음.

이희창 : 김영삼 폐하게 계겼음. 따라서 무조건 주사파.

클린턴 : 전세계의 질서를 책임져야 할 위치를 망각하고 교주의 죽음에 조의를 표한 바 있음.

카터 : 교주와 악수도 하고 배도 같이 타고 사진도 함께 찍었음. 그것도 부부동반으로!!!

〈재계〉

이건희 : 삼성그룹 회장. 김일성의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의

사장 이희건과 이름이 비슷함. 따라서 주사파.

정주영 : 한 때 김영삼 폐하게 대들었음. 또한 대선출마로 인해 재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려 체제의 균간을 흔들었음.

최종현 : 주사파의 사돈. 주사파 척결을 위해서는 연좌제의 부활을 심각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

〈문화예술계〉

이홍렬 : 콧구멍에 오백원짜리 동전을 집어넣어 보임으로써 반자본주의 의식을 유도했음. 또 최근에는 ‘한다면 한다’고 외쳐 극렬한 폭력분자들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고 있는 것 같음.

채시라 : 경치가 예쁜 탓에 다른 여성시민들에게서 삶의 의욕을 빼앗고 성의 상품화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주범임. 최근에는 모 여성 월간지의 표지인물로 등장해서 치마를 약간 들어올리는 포즈를 취해 남자들의 정신을 혼돈시키는 등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영자 : 채시라와는 정반대이지만 결과는 같음. ‘저런 애도 TV나와서 돈버는데 나는 뭔가’라는 자조섞인 실의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있음. 특히 저녁식사 시간대에 되지도 않는 코미디를 함으로써 구토를 유발케 하고 결국에는 UR반대시위를 부채질하고 있음.

노영심 : 위와 같음.

이승철 : 주사파였다가 전향하기를 수차례 거듭함. 아직도

위험인물

현진영 : 현재는 주사파 조직원으로 복역 중. 그러나 '현진영 GO 진영 GO'라는 뮤직비디오는 주사파들 사이에서 전경퇴치 교본으로 쓰이고 있음. 특히 체포 당시 공개적으로 세상에 불만이 많다는 식의 발언을 하여 충격을 준 바 있음.

이태백 : 술에 취한 채 연못에 뛰어들어 자살하려고 한 적 있음. 아주 오래된 주사파.

변영로 : 늘 술독에 빠져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음. 극렬 주사파.

안성기 : 이름이 아주 흥취함. 불순한 의도가 적나라하게 엿보임.

마이클 잭슨 : 여의도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했다가 문민제국의 문화부에서 거절하니까 외교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밤미의식을 선동하였음.

대중가요의 작사가들 : '주'로 '사'랑에 관한 가사를 씀. 주사파.

〈기타〉

내 동생과 친구들 : 친구들의 이름은 임의석과 김지용. 이들은 술을 마셨다 하면 네 가지를 마시거나, 네 잔씩 마시거나, 한 잔을 네 번에 나주어 마시거나, 네시 간 동안 마시거나, 새벽 네시까지 마시거나, 나흘 동안 마심. 더구나 꼭 네 번씩 토하기까지 함. 주사파.

기관서비 일당 : 주사파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음.

〈주사파는 아니지만 위험한 인물들〉

김우중 :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한 적이 있음. 세계 혁명론자인 듯 함.

박상원 :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했음. 주사파는 아니더라도 과학적 사회주의자임에는 틀림없음.

고현정 : 주사파의 조카 며느리가 되었음. 관찰 요망.

예수 그리스도 : 주사파에게 가장 강력한 사상적 기반 제공.
따라서 그와 관련된 것은 모두 분서갱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 착실한 민주시민이면 자기 할 일
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누가 주사파인지 궁금해하
는 이유가 불순함. 아마도 자신들의 조직 현황을
살피려는 것 같음.

〈절대 주사파가 아닌 사람들〉

마르크스 : 주사파가 뭔지도 모름.

레닌 : 위와 같음.

스탈린 : 머리가 나빠 주사파가 뭔지 알 가능성이 없음.

심형래(영구) : 위와 같음.

양종철 : 주사파에서 받아주지도 않음.

나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를 철면같이 믿고 살고 있음. 따라서 절대 주사파 아님.

론에 밀려 하나의 헤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단순한 헤프닝을 넘어 현재의 남북대결 국면이 조성되게 된 원인이 되었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암운을 드리운 책임에 대해서는 언젠가 전민족 구성원에게 사죄해야 할 날이 올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박홍 총장의 발언후 이어진 정의구현 사제단의 성명이 남긴 분명한 역사의 책임일 것이다.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지껄인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마태오 12장, 36절)

결자애지에서 세계로 미래로

이처럼 박홍 헤프닝이 파문을 더해가면서 정부의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통일인사에 대한 탄압은 극심해져 갔고 어느새 남과 북은 정상회담 이전의 대결시대 분단의 원시시대로 회귀하였다. 물론 남북관계가 냉각된 데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박홍을 비롯한 보수 언론과 정부의 일관성없는 통일정책등 남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오랫만에 풀린 남북관계를 어리석게도 우리가 묶어버린 것이다. 앞서 짚은이들이 가져야 할 미래에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하였듯이 통일의 비전을 접어두고는 결코 대한민국과 민족의 발전을 전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길을 막아놓고는 다시 줄기차게 언론과 정부당국은 나라의 발전과 세계화를 연일 역설하고 있다. 그것을 표현하는 핵심구호가 바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구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1인당 국민 소득 만불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TV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제 한국이 과거의 후진, 개발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대열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좋다.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한다는 의지가 담긴 이야기라면 환영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위한 방법과 과정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그건 값싼 정치선전에 불과하다. 과연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이 가능할까? 당장의 현실을 놓고보면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예산의 30%를 국방비에 투여해가지고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알다시피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해도 부족한 판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면서 어떻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아마 우리 한국이 한국 국민이 선진국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수 부유층과 집권자들이 선진국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분단된 국가상황은 특수한 조건을 형성해놓고 있다. 막대한 군사비, 비정상적인 정치, 민족대결을 위한 외국에의 의존과 낭비 등등등 그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간첩을 잡기위해 투여되는 인력만해도 약 2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KCIA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하는 정보원을 합친 숫자). 창의력을 개발할 나이에 군대3년 다녀 오면 깡통이 되고…….

우리 국민속에서 위에서 이야기한 세계로 미래로라는 구호가 현실 가능성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려면 먼저 분단상황의 극복이라는 전제를 실현하여야 한다. 지하철마다 통일로 미래로라는 표어만 열심히 붙인다고 하여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없다.

작년 우리가 가졌던 통일과 민족번영의 절호의 기회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통일합의의 실현이 바로 그것이다. 작년 우리는 반세기동안의 대결을 청산하고 남과 북의 영수가

만나 통일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기로 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불의의 사고로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당초 정상회담의 일 주체였던 북의 김주석에 대하여 전범이니 잘 죽었다느니 하는 악성 구호가 남한을 휘몰아쳤던 것이다. 물론 이 부영의원을 비롯한 몇몇 합리적인 이성을 지닌 정치인들이 미국도 조문을 하였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조문을 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물에 콩나는 격이었다. 세계 각국이 모두 조의를 표하였는데 유독 같은 동포인 남한정부만 조의가 아니라 비난으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의 관계는 다시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3가지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국자간 대화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원강히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남북간의 쌀지원 협상도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핵심 쟁점이 정부간의 합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나 경제단체의 교류와 같은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남한신문에는 차관급회담을 했다고 보도되었지만 계약의 주최는 어디까지나 삼천리 합영회사 등 민간단체들로 귀결되어 정부 당국자간 대화로 격상시키려는 남한 정부의 노력은 무산되었다. 북은 작년 조문파동이후 내건 3가지 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결코 정상회담은 물론 당국자간 대화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종군위안부 문제등을 다룬 아시아여성대회에 북한대표의 참여가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었다. 북은 참가는 하고싶으나 당국자간 회담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차라리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남은 당국자간 접촉을 계속 고집하였고 결국 북은 참가를 포기하는 쪽을 택하였던 것이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자신들이 내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국자간 대화에는 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북한이 내걸고 있는 조건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김주석 서거이후의 조문파동에 대하여 사과할 것

둘째,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

셋째, 인민군 포로로 잡혀있는 비전향 장기수 3인을 송환할 것. 옛말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다시 남북간의 대결이 침예화된 직접적 계기는 바로 남에서 조문논쟁을 불러일으킨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남한이 쥐고 있다. 우리가 먼저 북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대화를 재개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며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속성상 사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장기수 송환의 문제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가 실현되고 나서 실천의 문제로 나중에 풀릴 성격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남한에서 먼저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임을 알 수 있다. 얼마전 미국을 방문했던 북한의 고위인사도 미관리와 만나 이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즉 다른 조건보다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지면 어느정도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미국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인 셀리그 해리슨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글에서 국가보안법 문제가 남북관계를 다시 푸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한바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제 남북화해와 통일로 가기 위하여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북한 이야기

우리가 통일을 위해 과감하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여도 뭔가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을 막연히 가지게 된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적화야욕 문제이다. 아무리 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더라도 이러한 북한공산집단의 남침위협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는 선뜻 손을 대기 힘든 것이다. 혹시 벼룩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은 아닐까? 더구나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한번 경험한 우리들로서는 더욱이 이러한 안정회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곰곰히 그러한 생각을 들여다 보면 상당부분은 허구적인 생각 자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 북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가는 심정으로 말이다.

지개운 보릿고개 이야기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절은 고생한 만큼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나이든 사람들에게서 쉽게 듣게되는 보릿고개 이야기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월남전 파병용사인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 언제나 상황이 어려우면 통치자들은 내부의 어려움을 밖으로 돌려 긴장을 완화하려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도꾸가와 이에야쓰가 일본내에 흩어져 있던 세력을 하나로 통일하고 나서 자신의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정벌이라는 기치를 세워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이다. 내부의 모순을 감추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부에 강력한 적을 만드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통치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인가 보다. 요즘은 국가경쟁력이라는 논리나 국제화시대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라는 논리가 한창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체모순을 은폐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요즘 공공물가의 인상과 임금 한자리수 인상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노사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세계화논리로 막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보릿고개 이야기도 물론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서 현재의 상황에 감지덕지해라!는 식의 논리는 인류발전의 보편적 원리를 깔아뭉개는 논리이다. 인간은 늘 새롭게 자신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가고 그 속에서 새로운 과제와 희망을 찾아나간다. 따라서 옛날에는 옛날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지향점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그것은 결코 억누를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양시켜야 하는 것이다.

보릿고개 이야기 중에 가관인 것이 바로 빨갱이 이야기이다. 한

국전쟁당시 기껏해야 5살(지금나이로 50세)이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한다. 너희들이 빨갱이를 접해봤느냐?

나는 겪어봤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놈들은 사람도 아니더라 등등등.

보통 이런 이야기는 해마다 6월 25일이 오면 틀어주는 반공영화를 적어도 40차례이상 반복청취한 결과로 획득된 간접경험이 스스로의 의식속에서 전도되어 마치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을 다녀온 미국교포의 글이나 가끔씩 애써 선택하여 틀어주는 통일전망대의 북한 방송을 보면 결코 북한에 빨달린 괴물이 살고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식의 집단 환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얼마전 북에 다녀와서 지금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옥살이를 하는 황석영이라는 작가는 자신의 북한방문 소감을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글로 남겼다. 외국인이 들으면 가히 웃음거리가 될 이야기이다. 아니 그럼 북한에 사람이 살지 풍뎅이가 살았단 말인가? 웃기는 책제목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그래도 작가는 자신의 소감을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으로 대표하였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북한 동포를 어떻게 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이 보릿고개 이야기를 극복해야 하리라고 본다. 유신정권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 국민의 피와 땀을 쥐어짜던 시절 그 고통을 잊게해 줄 환각제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북의 괴물이었던 것이다. 아직도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보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북한이 쳐내려오는것 아니냐 아니면 남에서 빨달린 괴물들이 거리에 나타나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문제는 우선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라는 차원으로 여러가지 형식으로 진행된 바 있으며 이 책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이미 시중에 북한의 정치사회문화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런 책들을 보면 이런 의식은 쉽게 깨질 것이다.

아무튼 북에는 괴물이 살고 있지 않다. 피에 짚주린 승냥이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언어와 같은 풍습을 지닌 동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몇년전 발표된 논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위의 반북 대결의식을 상당히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2년 2월에 발표된 서강대 나덕주 씨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요즘 우리나라 고교생의 대부분이(77.3%) 북한은 더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 나아가 고교생들이 북한방문이나 북한방송 개방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여전히 북한은 남한 적화야욕을 가지고 있는가?

북한은 지금 통일방안으로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방제의 핵심은 현재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단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혹자는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을 것이다. 북한동포들은 50년동안 유지되어온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도 급속한 흡수통일론자가 아니라면 북한의 이러한 체제유지 노력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

황이다. 어차피 상호 인정과 공존 공영에 기초하기 전에는 민족통일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남이든 북이든 한쪽에서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야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재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남한도 자신의 체제를 강요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과거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남한 적화혁명노선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근 10년동안의 북한의 정책은 별로 그런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김신조 등 무장한 북한군의 침투로 인하여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대남혁명을 위해 우리를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체제통합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민족통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 어디에도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한국전쟁의 참화로 인하여 더이상 동족상잔의 비극을 재연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남한경제와 군사력이 강화되어서 이제 무력을 통한 남한흡수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을 하였을 수도 있다. 아무튼 이제 북한이 무력침공을 통해 남한을 적화시킬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사고는 극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있다는데!

여미 위에서 이야기한 북한에 대한 전도된 인식을 벗어난 사람 중에는 제법 합리적인 지적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이다. 남한에서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무엇이 해결되느냐 북에도 그 비슷한 법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그러한 문제제기의 핵심이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곰곰히 따져볼 문제이다. 북한에는 과연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는지 말이다. 만약 그러한 법률이 있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 뿐만 아니라 북한의 그러한 법률에 대한 폐지운동도 우리는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비견되는 북한의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자.

북한이 총칼을 들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 할 수는 없다. 만약 북의 헌법과 형법에 남한 동포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굉장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이렇게 북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 하는 법률은 헌법과 형법의 조문들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북에는 1972년 12월 27일 만들어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 제5조에 다음과 같은 조문이 나온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다음으로 1987년 2월 5일 개정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제52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다.

“민족반역죄란 일제, 기타 제국주의 밑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약합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 자주권을 위한 반제민족해방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등 매국매족 행위를 감행한 죄를 말한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남한에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남한을 반 국가단체, 적성국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 북의 법에 나온 문구인 매국매족행위를 감행한 죄가 지칭하는 것이 남한정부의 활동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스스로 남한 정부를 외세 추종주의, 매국매족행위자로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이제는 남한도 당당한 통일의 주역으로 북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서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 군사독재 등과 같은 정통성이 없던 정권들은 이런 북한의 법조문을 유추해석하여 지레 스스로를 전복하려 하는 것이라고 도둑이 제발저린 식의 반응을 보였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민선에 의하여 정부를 수립하였고 갈수록 주한미군의 문제나 미국과 체결한 행정협정의 개정문제 등에 있어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는 면이 있지만 그 것은 김영삼 정권의 문제이지 남한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만약 스스로가 북한이 말하는 미제국주의에 영합한 매국매족 행위를 감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북한의 형법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

는 없는 것이다.

논의를 계속하다보면 북의 헌법과 형법은 별 무리없이 개정되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당 규약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법률에는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지만 노동당 규약에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옹호 고수하고 이를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남한의 각계 사회단체와 정당의 내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자유수호총연맹의 구호는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각당 각파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의견이고 약속이지, 결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통치행위에 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유수호 총연맹이 반공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서 일반국민을 잡아들여 감옥을 살리거나 외교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나가다가는 모든 국민들의 사고와 모든 단체 모든 당의 정책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통일을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비약될 수 있다. 만약 남북간에 합의서를 채택하였지만 어떤 정당이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당규약을 가졌다고 하여서 이를 실천할 수 없다면 다수결과 의회주의에 입각한 정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데버릴 것이다. 이는 북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모든 정당의 규약이 바뀌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자세는 민주주의와 정부의 기본구성원리를 망각한 소치에 불과하다. 물론 북한내에서 노동당이 다수당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노동당의 규약이 국가통치행위 자체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는 정무원이라는 행정기구가 있고 최고인민대표자회의와 같은 입법의결기구도 존재한다. 그래도 노동당대회나 최고인민대표자회의가 비슷한 것이 아니

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북한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나 파악도 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나아가서 그러한 생각의 뒷전에는 여전히 북한 노동당이 집권당에서 몰락하고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통일은 어렵다는 반북반공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사람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노동당이 아니라 북한 정부 그리고 북한 동포전체와 통일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합의서도 채택하고 현재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3. 남북합의서 이행은 죽은자식 불알 만지기인가?

우리에게는 민족통일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 남북합의서가 바로 그것이다. 앞서 남에서 먼저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다시한번 남북화해 대화의 재개를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면 이제는 그러한 남북화해의 조성속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7.4남북공동성명에 이은 소중한 약속

일찍이 남북사이에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대원칙이 합의된 바 있다. 곧바로 유신체제가 수립되면서 통일에의 부푼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지만 그나마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의 대전제를 일구어낸 것은 큰 성과였던 것이다. 우리는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

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러한 노력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감격을 맛보았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전 민족의 박수속에 채택되어진 것이다.

1년 3개월의 동안의 오랜 논의끝에 남과 북은 전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 등 총 4장 25조로 구성된 약속에 도달하였다. 이어 1992년에는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3개의 부속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 합의서는 그야말로 민족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수행해야 할 과도적 단계의 모든 조치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합의서만 즉각 이행되어져도 통일조국이 실현되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좋은 것이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원문은 뒤의 자료에 실려 있다.

<제1장 남북의 화해>

먼저 합의서는 남과 북이 그동안 서로를 부정하고 대결하여온 상태를 극복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하였다. 서로에 대한 파괴와 전복행위를 금지하고 내정불간섭을 명문화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구조(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상 북한을 국가로 참칭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한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등)를 법률 실무위원회를 두어 새로운 남북관계에 맞게 고치기로 하였다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도 서로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제2장 남북불가침>

남북합의서 이행은 죽은자식 불알 만지기인가?

남과 북은 서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3장 교류와 협력>

민족경제의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과 복리향상을 위해 자원 공동개발 등과 경제교류 협력을 실시한다.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보도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이산가족의 상봉을 실현하고 자유로운 민족구성원의 왕래를 보장하며 끊어진 항로와 해로 철도와 도로를 개설한다. 우편 통신교류도 실시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으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로(문본)을 교환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원문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남북합의서는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분단질서의 내용과 그 방법을 더이상 짧고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잘 명시해놓고 있다. 이렇게 소중한 민족의 약속을 담은 문서가 이후 3년이 넘게 잠을 자고 있다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문서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남과 북에서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는데 그만 남에서는 국회비준을 미루어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권의 실천의지가 모자라는 것이 합의서의 이행을 계속 더디게 하고 통일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왜 정부에서는 이렇게 소중한 합의서의 실천

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일까?

동상이몽

위와 같은 의의를 지니는 남북합의서를 남의 정원식 총리와 북의 연형묵 총리는 나란히 사인하면서 앞으로 이의 실행을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북은 나름대로 인민대표자회의 표결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남북합의서를 받아들인 반면 남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단순 합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동상이몽도 이만저만한 동상이몽이 아니었던 것이다.

1992년 4월 9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접수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공개질의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명의의 답변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5. 남북합의서 발효와 관련하여]

* 남북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조약이 아니라 남북 사이에 성의있는 이행을 약속하고 있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다.(남북합의서 전문도 같은 취지)

* 따라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변란할 목적으로 대남적화 활동을 하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남북합의서의 채택과 별개의 문제이다.

참 재미있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아니 반국가단체와 신사협정

을 체결하고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럼 국내에서 잡아들인 각종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과도 공동성명을 채택하거나 성명을 낼 일이지 왜 교도소로 보낸단 말인가? 이것은 명백히 자가당착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다. 국제질서의 변화속에서 남북 관계의 변화가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바탕하여 남북간에 양자의 행정부 책임자가 서명까지 한 마당에 이제와서 발뺌하려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논지의 주장은 스스로 국가연합이라는 통일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과도 모순이 된다. 실상 국가연합식의 통일방안은 두개의 독립된 국가가 필요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경제교류와 기타협력)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개의 국가가 사전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무튼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다 보니 엉뚱하게 남북사이에 체결된 소중한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북합의서를 실리자

우리는 1995년을 그동안 통일원년이라고 불러왔다. 그런데 한번 서로에게 작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자.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여러가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통일은 남북이 하나의 완전한 국가가 된 시점부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통일방안을 합의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럼 올해를 통일원년이라고 한다면 올해안에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통일을 이룬 것으로 되는가?

분단시대와 통일시대를 가름하는 기준은 뭐니뭐니 해도 자주적 입장에 서서 전민족이 대단결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의 시작으로서 남북합의서의 실천은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합의서가 실천되면 같은 민족으로서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활동을 대개 무리 없이 전개할 수 있다. 예를들면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있으며 편지를 주고받고 서로를 만날 수 있다.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북한지역을 찾아갈 수 있으며 물건을 사들이거나 팔 수도 있다. 이것이 통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물론 한 사람의 대통령을 뽑지도 못했고 군사적 편제가 단일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과 체계의 문제일 뿐이다. 합의서만 실천된다면 통일을 향유하는 주체인 국민 한사람 한사람은 민족공동구성원으로서 대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통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남북합의서를 살려내야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합의서 실천이 바로 통일 시작이기 때문이다.

합의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민족구성원이 다시한번 그 실천을 약속하고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하여야 한다. 남한정부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비준을 거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은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당한 권리로 주장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보안법이 먼저 선행하여 폐지해야 됨은 두말할 나위없다.

현재 우리가 벌이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바로 이러한 남북합의서 실천을 위해 남북해외 민족이 벌여야 하는 노력중에서 남한에 사는 민족구성원이 벌여야 하는 핵심적인 사업인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없이 통일은 없다.

4. 철조망보다 더 강한 분단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현재의 남북당국자의 대화재개를 이루어줄 핵심 조건이 국가보안법 폐지이고 통일의 시작인 남북합의서의 실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양 속담에 훈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다. 아마 현재의 우리 분단 현실속에서 국가보안법이 부리는 행패도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휴전선에 민족의 허리를 가로질러 놓여있는 분단의 철조망은 합의서만 실천되면 뺏지로 잘라내면 그만이다. 김남주 시인의 말처럼 38선은 38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속에 그리고 정부의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조문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은 그만큼 고치기도 힘들다. 휴전선 철조망이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면 금방 아! 이것이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구나 느끼지만 국가보안법과 같은 형체없는 유령을 상대로 이런 설명을 하기는 무척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가지 주의와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다양한 역사와 사회현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곧잘 논쟁으로

비화되고 만다. 논쟁은 그 성격상 과학적 논증을 많이 갖추었더라도 진위를 가리기 힘들다. 오히려 그것은 다수결과 같이 의견분포를 통하여 결론을 내리는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철조망에 핀 코 스모스 사진을 보여주면서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보다 국가보안법의 조문을 설명하고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힘든 과정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분단의 장벽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결국 우리사회의 다수, 정확히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의 다수가 그 폐지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대, 하지만 진짜 상대와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5. 대통령 제조기

통일시대에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결코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역대 독재정권들이 통일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가보안법을 애지중지 유지하려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지닌 또다른 기능으로서의 독재정권유지와 민주주의 억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모래시계의 한계

12·12 군사반란자들이 80년 민주화의 봄을 빼앗아가려 할 때 우리 국민들은 격렬한 저항을 하였다. 광주민중항쟁이 바로 그것이다. 광주민중항쟁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가 새로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민중을 탄압할 때 이에 거부한 국민적 항쟁이었음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얼마전 TV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 모래시계는 가히 시청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모래시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몇가지 이야기를 알고 있다. 아직 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그 정도도 감지덕지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밝힐 것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 하나는 미국의 개입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시에도 간첩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항쟁 당시 외딴 섬처럼 고립된 광주에 있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정부의 발표와 언론기관의 보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잘 생긴 아나운서가 9시 뉴스에서 해설한 광주의 진상은 바로 간첩의 선동에 의한 폭동과 사태였다. 거기에 덧붙여 그 간첩중 몇을 체포했다는 방송까지도 나왔다. 당시에 9시 뉴스를 진행했던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그들도 간첩이라는 말로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아무튼 국민의 대다수는 강도도 아닌 간첩이 나타났다는 데 별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신군부는 이런 조작을 통하여 김대중과 많은 무고한 시민을 간첩단으로 몰아부치고 마침내 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탄생배경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적이 없는 나라중 하나이다. 여당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거나 야당이 무능력한 경우도 있겠지만 독재정권의 계속적인 지배를 가능케하는 도깨비방망이가 있다.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상대에게 국가보안법이라는 도깨비방망이를 들이밀어 국민들로부터 매장되게 하거나 간첩사건을 중요한 정

치적 국면에서 발표하여 독재정권의 위기를 피하면서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자극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선거와 간첩단의 핵심관계

지난 92년 대선당시 남로당 이후 최대 조직사건이라 일컬어지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이 대통령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 '1차 발표'가 이루어졌다. 결국 민주당 당직자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난 할머니 간첩에 의한 조직사건은 김대중 후보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주고 반대로 집권여당에는 더할 나위없는 호재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역사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1958년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사건

1956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정 부통령 선거에서 장기집권을 노리던 이승만 후보는 조봉암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었다. 진보당의 정치적 진출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권은 1958년 1월 12일 진보당위원장 조봉암과 간부 7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였다.

검찰은 조봉암에 대하여 “진보당을 결성함에 있어서 북한괴뢰집단에 호응하여 그에 동조하는 평화통일방안을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전복수단으로 동괴뢰집단과 야합하기로 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당시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북진통일론이나 북한불인정정책이 주류를 이루었고 평화통일론을 제안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취급을 받았다.

대법원은 평화통일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간첩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재심이 기각되기가 바쁘게 사형집행이 됨으로써 ‘해방이후 최대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어졌다.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72년 유신체제가 선포되었으며 개발독재 논리가 확산되고 7·4 공동성명은 정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에 분노한 민중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시기에 긴급조치가 발동되어 암울한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조종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발표하였다.

민청학련과 인혁당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채 1975년 4월 8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뒤, 채 24시간이 안된 4월 9일 새벽에 인혁당 관계 여덟 사람이 그 가운데는 32살된 여성남군도 있었지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인혁당사건은 조작되었다고 이야기한 김지하 시인을 비롯하여 함석헌 선생님, 문동환 목사, 김상근, 이해동 목사 등이 구속되거나 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재판이후 교도소로 가는 수송차량 앞에 드러눕기도 하였으며 인혁당 관계자들의 구명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1986년 통일민주당 유성환 의원 국회 발언사건

5공의 군부독재정권에 대한 정치적 공방의 열기가 점차 높아져 가던 1986년 10월에 일어났다. 당시 제131회 정기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발언자로 내정되어 있던 유성환 의원의 발언원고가 사전에 누출되면서 국회본회의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급기야 국회는 산회하고 유성환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속되었다.

유성환 의원의 발언내용에는 “반공이 국시인 상황에서 올림픽에 동구 공산권에서 대거 참가하겠느냐? 국가의 이익을 거시적으로 볼 때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위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쓰여져 있었다. 재판부는 유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지만 검찰이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죄로 판정되었다.

유성환 의원은 석방된 이후 지금은 민자당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지붕 세가족 살림이 이제는 두집 살림으로 줄어든 민자당이지만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사람이 버젓이 국가보안법으로 사람을 잡아가두는 정당에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14대 대통령 선거 92년 10월 안기부는 북한 고위 관리가 연계된 해방이후 남한 최대 규모 간첩단 사건이라고 주장하였고 대선 시기 대도시의 역 전에서 '전국 순회 간첩장비 전시회'를 열었다. 또한 항소심 재판 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사진을 담은 안기부 명의의 스키거를 각 곳에 부착함으로써 혐의사실의 사전유포와 사진게재라는 명예훼손을 범하였다.

안기부는 대선시 북한이 '민주당을 지지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선실 간첩단 사건과 무관한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여론 재판을 유도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14대 대통령 선거는 지역감정과 용공음해라는 무기를 잘 활용 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끝났다.

앞에서 제시한 사건들의 특징은 분단 상황이라는 우리나라의 사정과 정치적 격변기에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과 확대 해석,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조작 가능성성이 높으며 독재정권에 의해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치명적인 영향 을 주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로막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은 바로, 국민들의 의사와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적용됨으로써 냉전과 분단이라는 고정된 틀에 얹매인 국민들에게 허구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하였던 것이다.

6. 인권의 사각지대

이제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동시에 독재정권을 지탱해주는 기둥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지니는 폐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인간사의 근



본이랄 수 있는 한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반인륜적 악법인 것이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고 지금도 그러한 인권유린의 만행은 계속되고 있다. 범죄사실이 성립하는 순간에서부터 연행과 수사과정 그리고 복역과정 심지어는 출소후에도 우리는 결코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 인간이 태어날 때 배꼽을 달고 나와 죽을 때까지 달고 있다. 한 인간이 국가보안법은 한 번 자기의 먹이로 된 인간을 최후 파멸의 순간까지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다.

막걸리 보안법(범죄의 성립)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막걸리 먹다가도 잡혀갈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빗대어 한 말이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시골 장터에서 얼큰한 말이다. 김일성이보다 더한 놈일세 그려!” 이런 말 한마디만 이 나쁜자식! 김일성이보다 더한 놈일세 그려!”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곧바로 국가보안법상의 범죄자가 되어 감옥신세를 져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국가보안법은 그 적용에 있어 대상으로 되는 행위가 목적의식적인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고사하고 일반국민의 객기 내지는 우발적인 발언까지도 처벌하였다. 법조항 자체가 무척 추상적이어서 범죄행위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검찰과 재판부의 생각과 의지에 달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침 대대적인 반공캠페인이라도 벌

어지는 시기이면 이러한 막걸리 보안법 위반사건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국민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으로 검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어떤 사람은 고무 줄에 비유하기도 한다. 무죄에서 사형까지 죄만들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남용사례 소위 막걸리 보안법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 1) “6.25 도발은 소련놈과 미국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 “공산주의의 목적은 나쁘지만 그 방법은 나쁘지 않다. 공산주의자들의 과학적 관리법은 배울 점이 많다” 등의 발언을 하여 구속처벌됨
- 2)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북은 거지도 없고 빈부의 차이도 없다. 남한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가난에 허덕인다. 그러나 북한에는 자유가 없다”는 발언을 하여 구속 처벌됨
- 3)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북한 군기를 불러 구속처벌됨
- 4) 전문적인 우표수집가가 북한의 선전문구가 있는 우표를 매수 취득하여 구속처벌됨
- 5) 목사가 설교시간에 “월남의 공산당 지도자들이 사(私)를 벼리고 공(公)만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기에 그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말하여 구속처벌됨

또한 유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로는,

- 1) 가옥을 철거하려는 철거반원에게 “김일성이 보다 더한 놈”이라는 언사를 하여 구속됨
- 2) 영어를 모르는 상인이 미 군인의 주문에 의해 붉은 낫과 망치의 도안과 North Korea, Land of Free라는 영문글자가 부착

된 잠비를 제조, 진열하여 구속됨

- 3)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라고 발언하여 구속됨
- 4) “예비군훈련이 지긋지긋하다. 안받았으면 좋겠다. 내일 판문점관광을 가는데, 그 곳에 가서 북으로 넘어가 버리겠다”하며 술에 취하여 객기 어린 농담을 하여 구속됨
- 5) 술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너는 김일성이 만큼 잘하느냐. 현정부가 무얼 잘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말하여 구속됨
- 6) 재일동포 유학생이 “북한이 남한보다 중공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말을 하여 구속됨
- 7) “남한에는 짜짱면이 싸고 맛이 좋다” “경부고속도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다”(일반인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하였다고 하여 역시 “국가기밀 누설죄”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구속됨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과 반독재운동뿐만 아니라 민중의 일상 생활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 발언 하나하나까지도 통제함으로써 남한 사회를 감시의 눈이 번득이는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으며, ‘레드콤플렉스’, ‘사상공포증’을 창출하였다. 이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할 말과 안 할 말을 본능적으로 구별하도록 하여 사회비판적 의식과 민주민권의식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북조선이나 김일성 주석 같은 용어는 생활 속에서 사용이 꺼려졌던 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의 글은 이러한 실제 있어왔던 국가보안법의 남용사례를 토대로 구성한 가상의 글이다.

〈꽁트〉 모질이의 하루

모질이네 가족은 모두 다섯명이다. 동해 한적한 바닷가에 사는 모질이네 아버지는 며칠전 고기를 잡으로 나가신 후 소식이 없다. 그래서 아침에는 서울서 대학다니는 형에게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왔다. 오늘도 근처 농공단지의 공장에 일나가는 어머니는 수십어린 표정이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어 별일 없을 거라고 전화를 받는다. 중학교 2학년인 모질이는 아버지에게 아무일 없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국민학교에 다니는 모순이의 손을 잡고 꼬불꼬불 산길을 돌아 학교로 향한다. 학교가는 길은 그래도 신이 났다. 모질이가 제일 좋아하는 윤리시간도 있고 방과후에는 윤리선생님과 더불어 학급신문을 만들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학교를 얼마동안 떠나있다 돌아오신 윤리선생님은 언



제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친절하고 정이 많다. 방과후 윤리선생님과 다정히 예쁜 사진도 오려붙이고 글도 적으며 즐겁게 오후를 보냈다. 그런데 하교시간에 검은 승용차를 탄 아저씨들이 갑자기 와서는 교무실 윤리선생님의 책상을 뒤집어 엎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끌고 나갔다. 너무 놀란 모질이는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무슨 일일까? 모질이는 그날 저녁 TV뉴스에서 선생님과 함께 만든 학급신문이 북한도 사람사는 곳이다. 통일을 빨리 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이며 따라서 선생님을 구속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불어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도 동일한 혐의로 내사중이란 이야기가 덧붙여졌다. 겁이난 모질이는 문을 꼭 걸어잠그고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밤이 깊어갈 무렵 어머니와 함께 공장에 나가는 옆집 순이엄마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오셨다. 오늘 공장에서 작업환경개선을 요구하며 아저씨들이 모여



사장님께 항의를 했단다. 그것이 노동자들의 단결과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해방을 의미하는 맑스레닌주의 추종 행동이라 같이 있던 어머님도 국가보안법 혐의로 경찰서로 끌려가셨다는 것이다. 이제 모질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행복하던 평범한 우리집에 이게 웬 날벼락인가? 그런데 학교간 동생 모순이는 웬일로 이렇게 안돌아오는 걸까?

모순이는 지난주 미술시간에 농촌풍경을 그리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붉으스름하게 그을린 얼굴의 아저씨들이 어깨걸고 붉은 저녁노을녘에 밭에서 돌아오는 그림을 그렸었다. 그 그림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미술작품 경진대회에 출품되었는데 붉은색을 지나치게 사용한 점, 농민들이 어깨걸고 걷고 있는 모습이 적색혁명을 선동하는 것이라 이유로 의식화 배후를 수사한다고 시내의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곳에서 모순이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얼마후 같은 곳으로 며칠째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것이 아닌가? 온몸에는 멍이들고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자서인지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는 그날 고기가 잘 잡히는 북쪽방향으로 계속 배를 몰고 가다가 그만 북한 어부들의 배를 만난 것이다. 이것을 간첩 접선으로 오인한 해안경비대에 연행된 아버지는 갖은 고문을 당한 것이다. 다행히 간첩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잠입탈출 예비음모와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북한어부인 줄 모르고 고기가 잘 잡히느냐는 말을 건넸다가 북한 어부가 “아주 잘 잡히고 있음등”하고 대답하는 바람에 반국가단체 성원과 회합통신을 한 꼴이 된 것이다.

한편 서울서 대학다니는 형은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 부교재로 “자본론”을 서점에서 사 가지고 가다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서울에서 검거되었다. 서점에서 파는 책을 산 것이 문제가 될 줄이 야! 그리고 그 책을 사서 보라고 한 교수님은 또 뭔가?

도대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운 모질이는 다음날 갑자기 유명해진 자신을 발견하였다. 며칠후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간첩단이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4대 일간지의 1면 머릿기사로 일제히 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모질이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나와있었다.

제목은 ‘가공할 가족 간첩단 사건’ 온가족이 북괴의 지령아래 노동, 농촌 학원에 침투하여 체제전복 활동을 벌여……

온 국민 경악! 심지어 국민학교에 다니는 딸까지 포섭!

배후 추적중! 딸아난 이 조직 중앙위원 모질이 전국 긴급지명수 배……

모질이는 내내 자신과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 때문인지 알

지못하고 다만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낯선 바닷가를 오늘도 걷고 있다.

고문전문가 이근안(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수사과정)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구 법적용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기본권을 유린당하고 범죄자로 조작된다. 정권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간첩을 양산해낼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전기통닭구이, 물고문, 성고문 등 여러종류의 고문이다.

88년 12월 21일 한 전문직업인이 우리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명 얼굴없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바로 그이다. 그는 김근태 씨에 대하여 2번의 물고문과 8번의 전기고문을 가했다. 물론 그의 특기는 따로있다. 바로 어깨관절뽑기가 그것!

전기나 물고문이야 웬만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이면 해낼 수 있지만 이 어깨 관절뽑기는 어느정도 힘도 있어야 하고 골격과 근육에 대한 전문적 기술이 있어야 한다.

야! 불어!(팔을 어깨에서 잡아뽑는다)

윽, 안돼!

안불면 넌 죽어! 내가 여럿 이렇게 죽였다(팔을 다시 어깨로 박아넣는다)

그런데 그는 또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36계출행랑! 그는 88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마자 곧바로 도주,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미용실을 한다는 그의 아내조차도 7년동안 못보았다고 하니 가히 그의 도망기술은 고문기술 못지않게 수준급이다.

아마 자신이 고문하던 수많은 시국사범들로부터 수배생활을 들어 터득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욱 가능성 있는 이야기는 권력을 위해 멸사헌신해온 그를 '어른'들이 보호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89년 12월 24일 정부는 그에 대한 공개수배령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수사단서는 증명사진 한장 그리고 1m70의 키에 90kg이나 되는 건장한 체구를 가졌다는 것이 전부였다. 같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술 펴먹고 놀려다니고 하였는데 겨우 수사단서가 그것밖에 없단 말인가.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반국가사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경찰을 그들이 불잡아 징역을 살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고문활동에 대한 응호이고 방조이다. 실제로 고문을 통해 피의자를 치사에 이르게한 사람들 조차도 보통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다가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고 나면 곧바로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일쑤였던 것이 한국역대 정권의 모습이었다.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으로 구속되었던 9명중 7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93년 11월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검찰은 이근안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94년 7월 반제동맹당 사건으로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했던 박충렬씨 등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나를 고문한 경찰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것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함주명씨 등 장기수분들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러한 검찰의 부당한 처사는 일반인들에

게 알려졌다. 이를 통해 다행히 그에 대한 공소시효가 99년 8월 16일로 연장되었다.

95년 1월 유엔의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다고 자부하는 정부 이지만 이근안이 잡히지 않는 한 여전히 국가보안법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가혹한 고문행위의 자유는 지속될 것이다.

현재 우리정부가 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7조에서 '고문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도 국가를 전복하려는 붉은 세력에게는 결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구속기간 연장

이처럼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고문행위는 그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길기 때문에 더욱 조장되고 있다. 고문으로 인한 상처가 다 아물만큼의 충분한 수사기간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보장되고 있다. 즉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2차에 걸쳐 약 10일 총 20일동안의 수사를 구치소가 아닌 임의의 경찰 정보기관의 수사실에서 조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남영동, 욕인동 등의 대공분실과 보통 남산으로 불리워지는 안기부 밀실에서의 수사는 그 위력이 익히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아무도 없는 고립 무원지경에서 날마다 쏟아지는 고문속에서 20일동안 수사를 받게되면 아무리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도 묵비권은 커녕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힘들다. 이 속에서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모두 정지되며 오로지 중요한

것은 생존의 원리일 뿐이다.

만델라가 오래 살았다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수형생활)

1989년 세계인과 주요언론은 인종분쟁으로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7년간의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되는 넬슨 만델라를 맞이하기 위하여 주목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양심을 지키며 투쟁해온 만델라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남아공 백인정권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분노하였다. 그러나 이곳 한국땅에 만델라보다도 훨씬 오랜 세월을 자신의 사상과 양심을 지키며 어려운 감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민에게 있어서 조차도 그러한 사실은 생소하다. 오랫동안의 분단질서속에서 좌익사범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당연한 상식처럼 굳어져온 탓일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 그들도 만델라처럼 흉악무도한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하나의 인간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기억속에서 덧씌워진 붉은 빛을 조금만 걷어내면 그들이 바로 같은 민족 같은 동포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넬슨 만델라의 27년보다도 더 오래 감옥에 갇혀 있는 국가보안법 관련 수감자가 20명이나 되며 7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만 75명이나 된다.

더군다나 이 속에는 무려 45년이라는 상상조차도 어려운 긴 세월을 단지 0.75평의 공간과 외부인과의 면회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있는 것이다. 바로 51년 국가보안법과 반공



법위반, 국방 경비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현재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선명(71세) 선생님이 그 분이다.

중인 김선명(71세) 선생님이 그 분이.
김선명씨는 45년동안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단 4차례의 면회를 제외하고는 간수를 제외한 어떤 인간도 만날 수가 없었다. 마치 소설이나 영화에나 나온 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에게 그동안 면회를 신청한 사람은 당숙(2번)과 재수(1번) 그리고 변호사(전국연합 대변인 임종인)가 전부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인 것이다. 만약 누구라도 근 평생을 감옥에서 살면서 단 4명의 사람과 짧은 만남을 가졌다면 미쳐버렸을 것이다. 김선명 선생이 아직도 생존해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다. 물론 이런 오랜동안의 수형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사망한 사람도 많이 있다. 한 장기수는 과거 자신의 부인이 떠준 텔웃에 자신의 목을 매었다.

이처럼 다른 형사범과는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선고단계에서부터 중형을 받게되고 수형생활 또한 단연 길다. 그들은 오랫동안의 수형생활을 대개 독방에서 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빵잽이(교도소의 수형자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말)들의 생활은 물론 그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0.7평의 공간에서 자기와의 묵묵한 씨름을 한다. 1987년이후 민주화투쟁의 결과로 많은 시국사범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 의하여 생활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은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폐지투쟁과 반독재투쟁의 결과로 국가보안법위반 장기수들중에서 많은 분들이 석방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청년의 나이에 들어갔던 감옥의 문을 나설 때 이미 호호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연례적으로 있는 석거탄신일과 성탄절 특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형과 가석방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림의 떡인 것이다.

쇼생크탈출 (출소후에도 이어지는 인권유린)

과거에는 보안감호소라는 곳이 있었다. 1989년 사회안전법의 폐지 이후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청주보안감호소가 있어 교도소에서 출소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일정기간마다 심사를 받고 그 심사에서 불합격되면 교도소 생활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감호소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형기를 다 마치고 나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무기형을 사는 죄수가 10년에 한번씩 심사위원회 앞에 나가 감형 및 가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면접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별다른 고려 없이 언제나 면접 결과는 석방불가 판정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죄수는 또다시 다음번 심사를 위하여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그 죄수

에게는 10년마다 찾아오는 희망이지만 판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쉽게 판정에 임하고 자세히 알아보려 하지 않고 그저 불가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영화속의 일이 남한에서는 최근까지도 계속되어왔다. 모국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형을 받은 서준식(전 전국연합 인권위원장)씨의 경우를 보면 청송감호소가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다.

서울대 법대 4학년에 재학중이던 재일동포 서준식씨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7년의 옥살이는 전초전! 감옥문을 나서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안전법이다. 89년초 보안관찰법으로 변모한 사회안전법은 그야말로 법적으로 정해진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그대로 제2의 감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서준식씨는 네차례나 거듭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10년동안 옥살이를 더해야 했던 것이다.

현재는 보안관찰법으로 모습을 바꾸어 버젓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안전법의 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5년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간첩죄 등으로 형기를 마친 사람 가운데 사상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되었다. 그 당시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후 교도소로 보냈던 많은 장기수형자들이 감옥에서 출소할 시기가 되어 무더기로 국가보안법위반자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국가보안법위반자들이 출소하면 임의로 보안감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법을 제정하였다. 물론 사회안전법의 제정은 유신독재하에서의 강압적 제정이었고 초보적인 법률 상식인 일사부재리에 인 분위기속에서 제정되었고 어긋난 대표적인 악법이다. 법의 일반적 원칙의 하나는 일사부재리로서 동일한 죄에 대하여 두번 벌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법을 지

기는 법무부가 스스로 사회안전법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어겼던 것이다.

암명높은 사회안전법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새로이 변신하였다. 바로 보안관찰법이 그것이다. 물론 보안관찰법이 노리는 대상은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다. 안상운씨의 경우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사회안전법에 의하여 그리고 다시 지금의 보안관찰법에 의하여 계속 억류되고 감시받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고교를 나온 안상운씨는 남노당산하 민주청년 동맹의 대덕군 조직·선전책으로 활동하다 6·25가 나자 지리산에 들어갔다. 1년반 동안 이현상 부대 1대대장으로 산생활을 했던 그는 52년 2월 대성골에서 치열한 접전끝에 체포돼 대구 군사법정에서 비상사태 특별조치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5년으로 감형돼 67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그는 76년 6월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감호로 다시 구금돼 청주보안감호소에서 6년간을 보내야 했다. 82년 출소한뒤 90년 2월까지 보안관찰 대상자로 분류돼 활동·주의의 제한을 받았다. 지금은 한약방 일을 거들며 생계를 잊고 있다.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고 나서 감호소에 갇혀있을 필요는 없게 되었지만 보안관찰법에 의한 인권유린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법에 보장되어져 있는 기본적 인권이 유린된 상태로 계속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아도 계속해서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직장을 구하거나 주거지를 옮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구나 함께 감옥생활을 한 과거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7. 엿장수 마음대로—법은 만인앞에 불평등하다

1989년 1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곧이어 문익환 목사와 유원호씨의 방북, 임수경씨와 문규현 신부의 방북과 판문점을 통한 귀환, 박철언씨의 비공개 평양축전 참관 등으로 인해 그해 신문과 TV뉴스는 방북기사로 연일 장식되었다. 그러나 문익환 목사와 유원호씨, 임수경씨와 문규현 신부만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고, 나머지는 처벌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행위는 형식상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통치행위에 해당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의 요지를 발표하였다. 사실 그간의 대북정책 중 형식상 많은 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고 있었고, 그 실질적 내용은 내란 외환죄의 공범, 예비 음모 유형들이었으나, 이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 ‘통치권의 행사’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 그 대답이었다. 이는 ‘나는 해도 되지만 너는 해서는 안된다’라는 논리이상이 아니다.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어 사법적 판단을 함이 부적당한 행위에 대하여 사법부는 판단을 회피한다는 통치행위론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이라는 근대 법치국가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할 뿐만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도 헌법 아래에 있고 법 앞에 일반 국민과 똑같이 평등하다는 원리를 구현하여야 한다.

가장 극적인 일은 임수경양이 평양축전에 참가하고 있을 동안 박철언씨도 평양축전을 참관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정신나간 반역자로 매도되고 구속된 마당에 또 한 사람은 장관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극적인 대비는 우리를 참으로 당혹하게 만듭니다. 이 법적용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승인이나 통치행위를 들고 나옵니다. 그 논리의 모순을 일일이 지적할 필요를 느끼지 않거니와 여기 있는 우리 법률가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건 정부건 법 위의 존재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탄하는 것은 어떻게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통치행위론 같은 궤변이 정부당국자 입에서 벼젓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문익환 목사 사건 변론요지서, 「빼앗긴 변론」, 90쪽

이후 정부는 통치행위론만으로 권력측의 위법을 변명하기에는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인 줄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논란을 안게 되었다. 지난 4월 북한을 방문한 대종교의 안호상씨와 김선적씨의

경우에 정부의 사전승인없이 북한을 방문했다하여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불구속과 구속기소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사전승인이 없는 북한 방북은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지극히 반사회적인 '잠입 탈출죄(10년 이하의 징역)'로 되는 것이지만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다면 이는 행정목적상 필요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과 적용은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디에도 그러한 판단기준은 없다. 결국 가치판단의 기준이 애매한 상태에서는 정부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선택적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

